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1000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손동환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여형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 2. 체결된 채권 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1. 2. 체결된 채권양수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7. 23. 지식경제부로부터 서산시 E단지
에 입주한 기업체 등에 전기와 증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
라 한다)에 관한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받은 회사이고,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는 2010. 1. 11. 설립되어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수받
은 회사이며, F는 D의 대표이사이자 C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F와 C 발행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회사이고, 피고는 C의
채권자이자 주주인 회사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및 내역

1) 원고는 2011. 9. 1. C, F와 '원고가 F로부터 C 발행주식 28,000주를 14억 원에
매수하되, F 및 C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시설·설비 등에 대한 공사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만일 위 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고는 F에게 위 주식의 재매수를 요청하며, C은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F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2012. 1. 9. C으로부터 'G발전소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을 계약금액 9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지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10억 원을 C에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3. 4. 17. 위 용역계약에 따른 1회분의 기성 공사를 완료한 후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성금으로 청구하여 C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3) 그런데 C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기일이 지나도록 원고와 시설·설비 등에 대한 나머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4. 3. 26.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F에게 C의 주식에 대한 재매수를 청구하였다.

4) C은 2014. 7. 24. 원고에게 C의 증자 완료시 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받은 10억 원 및 기성금 4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2015. 1. 21. C의 자본금을 2,100,005,000원에서 18,913,565,000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5) 원고는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C 및 F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재매수를 청구한 주식의 대금 및 이 사건 지급약정상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202755), 위 법원은 2015. 1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 12. 확정되었다.

1. C, F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1,560,516,550원 및 이 중 160,516,550원에 대하여 C은 2015. 7. 2.부터, F는 2015. 6. 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4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6.부터 다 갚는 날

까지 1일당 0.0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C은 원고에게 1,4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8.부터 2015.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C과 D 간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1) F와 D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C 등을 상대로 주권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 C은 F와 D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495(본소), 2016가합579130(반소)], 위 법원은 2017. 11. 30. F, D의 피고에 대한 일부 본소 청구, C의 F, D에 대한 일부 반소 청구를 각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F, D에 대한 반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 C 및 D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2. 20. C의 청구와 관련하여 'D은 C에게 3,040,023,432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8.부터, 2,790,023,432원에 대하여는 2018. 11.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8나2002897(본소), 2018나2002903(반소)],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19다203354(본소), 2019다203361(반소), 이하 위 소송을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인정된 C의 D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라. C의 처분행위

C은 2019. 1. 2.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9. D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양도통지는 2019. 1. 10. D에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10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1,560,51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이 사건 지급약정상의 금원 1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각 채권들은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C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10. 4. 1.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 등을 양수받았으나, 발전소 건립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사업의 목표인 전기와 증기의 공급·판매를 시작조차 못해 본 상태에서 2017. 3. 8.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C의 재무제표에 대한 2017년도 감사보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C은 제7기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인 2016.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가 (-)18,929,296,330원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제8기 사업연도의 마지막 날인 2017. 12. 31. 기준으로 자본총계는 (-)17,016,099,669원에 달하여 종전의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이 사건 사업권은 위 폐업신고 이후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장부상 가액

17,273,419,705원 전액이 손상차손으로 반영되었는데, C의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은 모두 0원이며, 그 재무제표상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 목	제7기 사업연도 (2016. 12. 31. 기준)	제8기 사업연도 (2017. 12. 31. 기준)
자산총계	14,271,674,955	6,163,160,112
부채총계	33,200,971,285	23,179,259,781
자본총계	(-)18,929,296,330	(-)17,016,099,669
자본금	18,913,565,000	18,913,565,000
자본잉여금	2,823,550,400	2,823,550,400
결손금	40,565,690,840	38,652,494,179
매출액	0	0
당기순이익(손실)	(-)27,713,124,699	1,913,196,661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1. 21.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기간을 2019. 6.경까지로 연장해주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집단에너지시설 착공 전(공사계획승인 신청 전) 열수요 변동을 반영한 설비용량 변경 등의 변경허가를 득할 것'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었다.

(라) 한편 C은 2013. 3. 29. I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I'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I로부터 90억 원을 대여받았는데,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이 소유하는 서산시 K 일원 소재 발전소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L 주식회사와 우선수익자를 I, 우선수익한도금액 20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탁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와 I은 2017. 12. 28. 피고가 I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I에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17. 12. 28. 18억 원, 2018. 2. 8. 40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이에 I은

위 각 지급일자에 C에 위 채권양수도계약을 원인으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C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 2.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당시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자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인데(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 65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직전 2년 동안 C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C의 제8기 사업연도(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하여 'C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감사증거의 미확보'를 이유로 의견제시를 거절하는 등 그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 C은 2017. 3. 8. 폐업신고를 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폐업상태에 있고, 폐업신고 직전 2년간의 매출액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익의 원천이 될 전기와 증기를 생산할 설비 시설도 완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일 이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도 그 악화된 재정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

다69026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H은 이 사건 채권양도일인 2019. 1. 2. 기준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시가를 8,170,909,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위 채권양도 당시 I의 우선 수익권이 담보하는 I의 대여원리금의 액수가 위 부지의 시가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사업권이 유효한 상태에 있었고, 2009. 11.경 및 2009. 12.경 두 차례의 가치평가에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C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업권은 그보다 앞선 2017년도 감사보고서(갑 제7호증)에서 회수가능액의 산출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전액이 손상차손으로 처리된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두 차례의 가치평가는 이 사건 채권양도와는 약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뿐더러, M회계법인의 경우 2014. 1. 1.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평가 결과를 그 사업의 실패가 비교적 분명해진 폐업상태에서의 사업권의 가치 산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 사업권에 대한 조건부 연장을 해주었으나, C이 그 조건인 시설 설치를 마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한데도 다시 이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권 역시 원고 등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 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면서 신규로 C에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기존에 보유하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것이고¹⁾,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C이 그 소유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C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채무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

1)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신규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은 아니고 기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9.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액수는 6,707,036,238원이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액수는 4,291,644,869원으로, 피보전채권이 위 판결금 채권을 초과하고 있음이 계산상 분명하고, 피고가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관련 소송의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마쳤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위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항목	금액	계산내역 ²⁾
피보전채권 (주식매매대금)	1,560,516,550원	
	8,003,838원	160,516,550원 × 연 20% × 91일(15. 7. 2.~ 15. 9. 30.)/365일
	137,142,701원	160,516,550원 × 연 15% × 2079일(15. 10. 1.~21. 6. 9.)/365일
	2,202,480,000원	1,400,000,000원 × 일 0.06% × 2622일(14. 4. 6.~21. 6. 9.)/365일
피보전채권 (지급약정상대금)	1,440,000,000원	
	49,863,013원	1,000,000,000원 × 연 20% × 91일(15. 7. 2.~15. 9. 30.)/365일
	854,383,561원	1,000,000,000원 × 연 15% × 2079일(15. 10. 1.~21. 6. 9.)/365일
	56,778,082원	440,000,000원 × 연 6% × 785일(13. 5. 8.~15. 7. 1.)/365일
	21,939,726원	440,000,000원 × 연 20% × 91일(15. 7. 2.~15. 9. 30.)/365일
	375,928,767원	440,000,000원 × 연 15% × 2079일(15. 10. 1.~21. 6. 9.)/365일
합계	6,707,036,238원	

이 사건 판결금채권	3,040,023,432원	
	166,952,054원	250,000,000원 × 연 15% × 1625일(16. 12. 28.~21. 6. 9.)/365일
	1,084,669,383원	2,790,023,432원 × 연 15% × 946일(18. 11. 7.~ 21. 6. 9.)/365일
합계	4,291,644,869원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사업권 및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신탁 수익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채권양도가 C의 경영 유지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라고 인식하고 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2) 윤년 여부에 관계없이 총일수를 기준으로 계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4. 7. 16. C과 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C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등 피고와 C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는 이러한 C과의 거래를 통해 C의 전체 발행주식 중 371,001주(88.33%)를 보유하게 된 이래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까지도 C의 주주였으므로, C의 재정상태 및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7. 12. 28. I로부터 I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이 있을 때까지도 C은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그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받았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을 때까지도 C의 재정상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의 자력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욱
-----	----	-----

	판사	정수미
--	----	-----

	판사	손주완
--	----	-----

별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97(본소), 2018나2002903(반소) 사건의 2018. 12. 20.자 판결
에 따라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 받을 판결금 채권 3,040,023,432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 일체. 끝.